

의안번호	2214573
의 퇴 인	구자근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3.
추계번호	25C6479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체육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600만원(연평균 1,12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43조의3 신설)	1,120	1,120	1,120	1,120	1,120	5,600	1,1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3조의3(체육도시 심의위원회 설치)	체육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체육도시심의위원회를 둘(제1항)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43조의4(체육도시 의 지정) 및 제43조의6 (체육도시에 대한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체육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(안 제43조의4 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체육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3조의3(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)	○	
2	안 제43조의4(체육도시의 지정) 및 제43조의6(체육도시에 대한 지원)	×	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확인 불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의·의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3조의3 신설)

- 개정안과 같이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, 지정된 체육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체육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회의개최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1)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

1) 제14조(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)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,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
2. 문화도시의 지정, 취소, 변경에 관한 사항
3.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
4.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는데, 본 추계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함

-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민간위원은 14명이며, 2022년과 2023년 각각 7회, 2024년 5회의 회의를 실시하였음
- 개정안에 따른 체육도시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수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, 연간 4회 대면회의가 실시된다고 가정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위원 1명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1,120만원임

$$\ast 14(\text{명}) \times 20(\text{만원}) \times 4 = 1,120(\text{만원})$$

□ 추계결과, 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라 매년 1,12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0조의2 신설)	1,120	1,120	1,120	1,120	1,120	5,6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(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6 신설)

□ 개정안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의 체육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도시를 지정하고, 그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원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

- 다만, 체육도시 지정은 지자체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, 별도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스포츠도시 지정에 따른 지원내역을 미리 예상하여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취지와 유사한 ‘지역문화 스포츠산업 거점 조성’

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사업을 2026년에 신규 편성(4억원)하였고, 해당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

【표 3】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거점 조성 개요

-
- (목적)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, 대표 종목 육성 및 스포츠산업 육성
 - (기간) '26~'30년(총 5년, 공모)
 - (예산) '26년 4억원(2억×2개소), * 1개소 당 최대 380억원 지원(국비 114, 지방비 266)
 - (주요내용) ▲['26년] 선정 지자체 주도형 종합계획 수립, ▲['27년~] 시설·인프라 개선, ▲['29년~] 스포츠산업 육성, ▲['30년] 홍보 등
-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